

제211회 영등포구의회
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
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12. 1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52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
2018.12.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
연장하고, 그 밖에 현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특별회계 설
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(제6조)

나. 법제처의 「자치법규 입안매뉴얼」의 특별회계 입법형식으로 정비

-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규정 정비
- 별지 제1호서식(납입고지서) 개정 및 별지 제2호서식(독촉장)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-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3항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.12.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그 밖에 현 조례의 기금 운영 관련 조항을 특별회계 입법형식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조항을 신설하였고
 - 안 제3조~제4조에서는 「의료급여법」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

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항으로 분리하여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

- 안 제5조에서는 납입의 고지 규정과 별지 납입고지서 서식을 개정하고 현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인 독촉장은 삭제하였음
- 안 제6조에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규정 되어 있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지방재정법』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부칙 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■ 『의료급여법』

제25조(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고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3.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
4.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
5.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6.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제2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
② 기금은 급여비용, 대지급에 드는 비용,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■ 『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』

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(이하 "기금계정"이라 한다)을 설정·운용하여야 한다.